화순군민자유치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. 3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3. 10

다. 상 정 일 자 : 2001. 3. 10

(제9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

나. 개정사유

○ 「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」이 「사회간접 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용어 및 관련 법규 조항 변경

다. 주요내용

○ 조례명 "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"를 화순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

○ 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"민간시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"을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9항"으로 "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"를 "화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"로 변경

○ 기타 : "민자유치사업" 용어를 "민간투자사업"으로 변경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양정열)

○ 동 개정 조례안은 위임 법령인 "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"의 제명 및 내용중 「자금유치」가 「투자」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부합되도록 조례 제명과 내용의 문구를 개정키 위한 것으로,

○ 조례와 상위관련 법규의 체계를 일치시켜 해석상의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하고 조례의 시행과정에서도 자구 해석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

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리라 사료되며,

○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저촉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4. 질의 답변 요지

" 생 략 "

5. 토론요지

" 생 략 "

6. 심사결과

" 원안가결"

첨 부 : 화순군민자유치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지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중 "민자유치"를 "민간투자"로 한다.

제1조중 "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"을 "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9항으로 하고, "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"를 "화순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"로 한다.

제2조 제3항중 "민자유치사업"을 "민간투자사업"으로 한다.

제4조 제1호와 제2호 및 제5호의 "민자유치"를 "민간투자"로 한다.

제7조 제2항중 "민자유치"를 "민간투자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----------
제2조 (구성) ① 생략	제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생략	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은 화순군의회의원 5인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화순군수 (이하"군수"라 한다)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.	③ ---------- 민간투자사업 ----------
④ 생략	④ (현행과 같음)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제4조(기능) ----------
1.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	1. 민간투자 ----------
2.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	2. 민간투자 ----------
3.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	3. ----------
4.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	4. ----------
5.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	5. --- 민간투자 ----------
제7조 (간사등) ① 생략	제7조(간사등) ①(현행과 같음)
②간사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된다.	② ---------- 민간투자 ----------